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 27 선고 2020가단22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21. 1. 13.

판결 선고2021. 1. 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20. 2.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8. 14. 접수 제41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2.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

D는 2014. 4. 11.부터 2015. 12. 31.경까지 D 소유의 각 토지가 매도되거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 2. 10. 기준 체납액은 합계 191,605,080원이다.

나. 망 E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2017. 12. 31.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D, 자녀인 F, G, 피고 A,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D: 3/11 지분, 자녀들 : 각 2/11 지분)하였다.
- 2) 위 상속인들은 2020. 2.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가 각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4호로, 피고 C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G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등기소 2020. 8. 15. 접수 제41217호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가 있었던 2020. 2. 10.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예금채권	H조합 (I)	1,409
H조합 (J)	8,311		
H조합 (K)	20		
L조합 (M)	289,220		
N조합 (O)	65,993		
부동산	구미시 P 전 132㎡ 중 3/11 지분	363,600	
합계	728,553		
소극재산	조세채무	양도소득세	191,605,080
합계	191,605,080		

[인정근거] ·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D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3/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A과 피고 C,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한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득자인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0. 8. 15. 접수 제41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D에게 같은 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은석

별지